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제도는 제품 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이행 주체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의 제조·판매·수입업자

■ 대상 제품 및 포장재

구분	EPR대상 제품·포장재	EPR대상 제품·포장재
제 품	전 지 류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1차전지 마.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바. 니켈수소전지
	타 이 어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타이어, 나.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타이어,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라. 농업기 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
	윤 활 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에 사용되는 윤활유, 나. 군 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에 사용되는 윤활유, 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 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윤활유, 마. 선박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한국선박(외항선박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바. 어선법 제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에 사용되는 윤활유
	형광등	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
포 장 재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 세제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 살균제, 의복류, 종 이제품, 고무장갑 등의 포장재	가. 종이팩(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첩합·도포된 종이팩에 한함) 나. 유리병 다. 금속캔 라.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용기류,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트레이 포함)
	전기기기류 등의 포장재	필름·시트형 포장재 및 발포합성수지 완충재
	1회용 봉투·쇼핑백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봉투·쇼핑백(종량제 봉투 제외)

1. "전지류"는 시행령 별표 3의 제품(계산기 및 전자수첩, 면도가이발기 및 모발제거기, 휴대용 전등,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기기,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기기, 카메라, 시계, 어린이용 완구, 유희용구 또는 실내 게임용구)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2. "음식료품류"라 함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 등의 공전상의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 및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및 먹는 해양심층수를 말한다.
3.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시행령 제18조 제1호 가목 규정에 의한 음식료품류를 제외한 제1차 생산물을 말한다.
4. "세제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치약, 비누 및 기타세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비누 및 세제를 말한다.
5. "화장품류"라 함은 화장품법에 의한 화장품 및 애완동물용 샴푸 린스를 말한다.
6.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라 함은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말하며, 바이알·앰플·PTP포장 제품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병 모양이 아닌것으로서 내용량이 30밀리리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제품, 체외진단용의약품 및 의료폐기물로 배출되는 의약품을 제외한다.
7. "살충·살균제"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살균제 살충제를 말하며, 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8. "의복류"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봉제의복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및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의 제조대상이 되는 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를 말한다.
9. "종이제품"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종이제품을 말한다.
10. "고무장갑"이라 함은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의 제조 대상이 되는 고무장갑 중 가정용 고무장갑을 말한다.
11. "전기기기류 등"은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 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전기기기,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와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2.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단체가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포장재의 견본품 및 반품되어 폐기된 제품·포장재는 제외한다(폐기 증명서류(폐기물인계서, 세금계산서, 계량표 등)로 증빙시에 한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업무처리 절차

재활용의무 이행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연도 1월말까지 제출 또는 당해연도 최초로 수입 하는 경우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12월1일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경우 12월 31일 까지 제출 	매년 1.31까지
↓		
제품·포장재의 출고·수입실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제출 	매년 4.15까지
↓		
재활용의무이행 결과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 생산자는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출 	매년 4.30까지

■ 미제출시 제재사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관련근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2항 제2호
- ▷ 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업체에 대한 실제 출고실적 확인 후 의무대상자로 판명된 경우 의무이행계획서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역본부·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

※ 수도권지역본부 및 서울지사의 관할구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 소(우편번호)	전화☎/팩스㉠	관할구역
수도권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1길 1 (가운동) 가운드림프라자 3층 (472-060)	☎(031)590-0654,6,8 ㉠(031)590-0629,0660	과천,광주,군포,성남, 수원,안산,안성,안양, 오산,용인,의왕,이천, 평택,하남,화성,여주,양평
영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경남 김해시 칠산로 301번길 8 (621-150)	☎(055)320-0332~4,8 ㉠(0505)987-9981 ㉠(055)320-0344	부산, 울산, 경남
충청지역본부 제도운영팀	충남 연기군 남면 원수산로 129 (339-824)	☎(041)860-7721,3,99 ㉠(041)865-8193 (041)863-7724	대전, 충남
호남지역본부 제도운영팀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7 3층(506-813)	☎(062)949-0745,7 ㉠(062)443-0780	광주, 전남
서울지사 제도운영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프라자빌딩2층 (121-745)	☎(02)3153-0532~8 ㉠(02)6008-3023 3273-2979~81	서울,인천,김포,고양, 광명,구리,남양주,동두천, 부천,시흥,양주,의정부, 파주,포천,가평,연천
강원지사 제도운영팀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교직원공제회 8층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200-938)	☎(033)240-9543,2 ㉠(0303)3442-6699	강원
전북지사 제도운영팀	전북 정읍시 서부산업도로 672-26 (580-020)	☎(063)530-0821~5 ㉠(063)532-6050	전북
경북지사 제도운영팀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성서공단로 40길(704-801)	☎(053)580-7541~3,5 ㉠(053)580-7575	대구, 경북
충북지사 제도운영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공향로 150번길 73 KT 6층 (360-707)	☎(043)219-6441,4 ㉠(043)214-0763	충북
제주지사	제주시 일도2동 동광로 137 대동빌딩 2층(690-012)	☎(064)722-6542 ㉠(064)721-5564	제주